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9 발의연월일: 2020. 6. 8.

발 의 자:이정문・이상직・김윤덕

문진석 • 민형배 • 임호선

송갑석 · 김원이 · 이원택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함.

그런데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 재를 육성·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를 "대학의"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전체인원의 일정비율"을 "전체인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대학원의"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로, "전체인원의 일정비율"을 "전체인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4항 중 "범위, 비율"을 "범위"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 ②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대학원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 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 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 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에서 같다-----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하는 비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 다만, 의과대학, 서 신설>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 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입 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퍼센트 이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 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 학원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 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 에서 같다------

업예정자를 <u>포함한다</u>)의 수가 학생 모집 <u>전체인원의 일정비</u> 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④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체인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
원의 경우에는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
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
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④ <u>범위</u>